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실효성 확보 등〉
■ 권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21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 안 경 위	1
II. 제 안 이 유	1
III. 주 요 내 용	2
IV. 검 토 의 견	4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범위 확대	6
2.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행정조사 착수 및 행정조 사 결과 위원회 제공 근거 마련 등	15
3. 시정권고 요건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의결 포함 등 ...	22
4. 행정조사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28
5. 행정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 불소명시 신고인 주장 진실의제 ...	31
6.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구성 변경 등	35
7. 위원회의 조정 절차 상향입법	41
8. 대리인의 선임	4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칠승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24.
3. 회부연월일 : 2025. 9. 25.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난 5년간 피해 금액이 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침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높은 소송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018년 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조사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연계가 미흡하여 공정한 판단을 위한 절차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피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

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영업비밀 외에도 아이디어, 기술자료 등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사자료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인의 지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의결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라.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마.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사.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를 권고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기술침해 신고 및 분쟁의 조정·중재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IV. 검토의견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¹⁾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 건수는 한해 299건으로, 평균 손실액은 1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 재판 전문성 미흡 등으로 승소율이 낮고²⁾, 소송 기간이 길며³⁾, 승소 시 손해액 인정률⁴⁾이 낮아 소송을 통한 피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구제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를 반영하듯 기술침해 피해 발생 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이 35.7%(2023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현행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술침해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를 위해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침해행위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하였고, 기업간 합의를 통한 신속한 기술 분쟁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의

1) 중소벤처기업부(2025.3.)

2) 최근 5년간('18~'22) 기술분쟁 사건 승소율(25.6%)은 전체 민사사건 승소율(55.6%)의 약 2분의 1 수준(출처: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3) 판결(1심 기준)까지 1년이상 소요 기간: 민사 94.6%, 형사 77.5% (출처: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4) 민사사건 승소사건 중 법원의 손해배상 인용액은 청구액 대비 17.5%인 1.4억원 수준 (출처: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불응에 대해 과태료 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미비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는 조사 기능이 없어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실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이행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운영에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범위 확대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행정조사⁵⁾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상의 영업비밀⁶⁾에 준하는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취득·사용·공개 등의 행위에서

①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아이디어, ② 영업비밀,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 상의 기술자료, ④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상의 기술자료, ⑤ 「특허법」 상의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행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 -----.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7)에 따른 방법으로 중소기업기술을 침해하는 행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을 같은 법 제2조제3호8)에 따른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9)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을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제1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10)을 위반하여

현행	개정안
	<u>침해하는 행위</u>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항¹¹⁾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을 같은 법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¹²⁾를 위반하여 침해하는 행위 마. 「특허법」 제2조제2호¹³⁾의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을 같은 법 제127조¹⁴⁾에 따라 침해하는 행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

현행	개정안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 ----- ----- ----- <u>침해의 금지 또는</u> ----- ----- ----- ----- ----- 1. ~ 3. (현행과 같음)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3)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14)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를 위해 2018년 도입되었으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조사 신고건 중 약 31%(55건 중 17건)가 현행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공지성·비밀관리성 미충족 등 조사요건 미비를 이유로 조사가 착수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조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조사요건 미비로 기각되는 사건 비중이 줄어들고 다양한 기술탈취 행위조사에 대한 행정조사 착수 가능성이 높아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식재산청은 동 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은 현행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¹⁵⁾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침해행위(안 제3호 라목)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행위(안 제3호 가목)는 「하도급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¹⁶⁾와 「부정경쟁방지법」에

1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

따른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¹⁷⁾가 동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개정안은 중복규정에 불과하여 개정 실익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며, 조사중복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지식재산처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유효여부는 특허심판원의 전속사항인 점, 영업비밀 보호는 수사를 통한 강력한 대처가 필수적인 점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영업비밀을 명시할 경우 중소기업이 보호 수단 선택에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 외에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하여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정조사¹⁸⁾가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개별법률에 따른 행정조사는 각각 그 요건과 조사결과 처리방법에서 일부 차이점이 있고,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행정조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일면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 행정조사별 조사개시 및 처리 관련

구분	규율대상	조사개시	조사결과 처리	비고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아이디어	부정경쟁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이 조사 실시 가능	① 시정권고 및 시정 명령 ② 미이행시 공표 ③ 미이행시 과태료	조정연계를 통한 분쟁조기해소 유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기술자료	법 제21조(약정서 발급), 제25조(수탁·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등에 중기부장관이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실시 가능	① 개선요구 및 시정 명령 ② 미이행시 공표	조정연계를 통한 분쟁조기해소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기술자료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 실시 가능	① 시정명령 ② 시정사항 공표 ③ (상습위반)명단공표 ④ 미이행시 벌금	전 속 고 발 권, 사법적 제재(벌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자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중기부장관이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실시 가능	① 시정권고 ② 미이행시 공표	조정연계를 통한 분쟁조기해소 유도

자료: 중소기업부

다만,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기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일관되지 않은 판단기준으로 정책 일관성이 저하될 가능성, 「행정조사기본법」이 여러 기관에 의한 중복 행정조사를 제한¹⁹⁾하고 있는 점

19)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동법에 따른 행정조사의 범위 확대가 적절한 지에 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의 두터운 보호를 위한 행정조사 제도의 권한강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추가된 「특허법」과의 관계도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행정조사 착수 및 행정조사 결과 위원회 제공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정조사 착수 사유에 현행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자들의 신고 외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8조의2제4항 제2호, 안 제23조제2항제5호, 안 제27조제4항 신설), 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피해 중소기업자들의 신고 관련 서류 및 행정조사 결과를 위원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 ③ (생략)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u>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 ----- ----- ----- ----- ----- -----

현행	개정안
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⑤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 1.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2. 제2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송부할 수 있다. ⑦ 중소기업부장관은 자료를 가진 자가 제4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가진 자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해당 서면에 대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각 3회 이하의 범위에서 질문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지 여부

현행	개정안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제27조(자료요청 등) ① <u>조정부 또는 중재부는</u>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u>조정부 또는 중재부는</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u>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이후 중소기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도 이미 개시된 조사절차 및 시정권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② ----- -----. 1. ~ 3. (현행과 같음) 5. <u>제27조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7조(자료요청 등) ① <u>위원회는</u> ----- ----- -----. ② <u>위원회는</u> ----- ----- -----

현행	개정안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u>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항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 ③ <u>위원회는</u>----- ----- ----- ----- -----. ④ <u>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⑤ <u>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현행법은 기술침해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위원회의 조정·중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조정·중재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행정조사를 요청하거나 행정조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표 2] 최근 5년(2021~2025.9.) 행정조사 신고 및 위원회 조정 권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행정조사 신고 건수	17	14	17	20	9	109
조정 권고 건수 (비율)	11 (64.7)	6 (42.9)	4 (23.5)	4 (20.0)	1 (11.1)	26 (23.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은 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정조사 착수,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행정조사 결과 송부를 연계시킴으로써 조정·중재 과정에서 행정조사를 통한 분쟁의 실체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조정 성립률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표 3] 최근 5년(2021~2025.9.) 위원회 조정 성립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진행중	조정 종료						
			조정안 제시			기타			
			성립	불성립	계	신청인취하	조정중단 ¹⁾	각하 ²⁾	계
2021	25	-	10	5	15	-	10	-	10
2022	24	-	9	1	10	1	13	-	14
2023	33	-	12	7	19	1	13	-	14
2024	20	-	4	3	7	-	13	-	13
2025.9	26	15	1	2	3	-	5	3	8
합계	128	15	36	18	54	2	54	3	59

주 1) 사실확인 어려움, 피신청인 조정의사 없음 등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결한 사건

2)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장이 각하한 사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는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제도 간의 내부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안 제27조제4항은 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7조제5항은 위원회가 조정·중재 신청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신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7조제5항의 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정·중재 신청인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침해피해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에 착수하게 되므로 안 제27조제4항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두 조항을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자료를 가진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료를 가진 자와 신고인 간에 각 3회 이하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질문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8조제7항 신설).

이는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미국 디스커버리제도²⁰⁾의 증거조사방법 중의 하나인 ‘당사자 질문서’(interrogatories to parties)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20)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스커버리제도는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증거조사절차로서 소송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될 자가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서로 각종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함(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2020. p5)

미국 디스커버리제도의 ‘당사자 질문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한 질문을 기재한 서면을 보내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답변하는 제도를 말함.²¹⁾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들간에 직접 질문·답변 등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자료를 가진 자가 자료 제출의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미국 민사소송에서 활용되고 있는 ‘당사자 질문서’ 제도는 당사자들 쌍방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절차를 주도하고 포괄적인 정보·증거의 노출을 받아들이는 법률문화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권리구제의 확충 필요성 등 개정안의 취지를 함께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1) 미국 디스커버리제도의 질문서 절차(interrogatories to parties)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한 질문을 기재한 서면을 보내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답변하는 제도
- 질문의 수는 연방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25개로 제한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질문의 개수를 추가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함
- 상대방이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답변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제재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모독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1.2.) 중 인용

3. 시정권고 요건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의결 포함 등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침해행위의 중지 등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현행 “침해행위 행정조사 결과 피신고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미 신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 “위원회가 피신고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의결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안 제8조의3제1항제2호 신설), 위원회의 역할에 현행 “분쟁의 신속한 조정·중재” 외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공정한 판단”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신고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판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u> 30일 이내의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① --- -----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u> ----- ----- ----- -----.

현행	개정안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② (생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피신청인이</u>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u>그</u>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	1. <u>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미 신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u>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피신고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의결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③ -----<u>피신고인이</u>----- -----<u>특허청장</u> 및 <u>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u> <u>그</u>-----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 -----

현행	개정안
을 신속하게 조정·<u>중재하기</u>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중재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정하게 판단하기</u>----- ----- -----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판단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함에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조사결과의 교차검증을 통해 행정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정권고에 대한 피신고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표 4] 최근 5년(2021~2025.9.) 행정조사 시정권고 및 공표 현황

(단위: 건)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행정조사 신고 건수	17	14	17	20	9	77
시정권고 건수	1	-	-	1	-	2
공표 건수	-	-	-	1	-	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256건은 모두 조정이었는
바,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은 주로 조정인 것으로 보임.

[표 5] 2015년 이후 위원회 조정·중재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	진행중	조정현황(종료)						
			조정안 제시			조정안 제시 불가			
			성립	불성립	계	신청인취하	조정중단 ¹⁾	각하 ²⁾	계
15년	22	-	3	4	7	1	14	-	15
16년	17	-	6	8	14	2	1	-	3
17년	19	-	2	7	9	3	7	-	10
18년	19	-	3	9	12	-	7	-	7
19년	21	-	2	7	9	1	11	-	12
20년	30	-	6	5	11	-	19	-	19
21년	25	-	10	5	15	-	10	-	10
22년	24	-	9	1	10	1	13	-	14
23년	33	-	12	7	19	1	13	-	14
24년	20	-	4	3	7	-	13	-	13
25.9월	26	13	1	2	3	-	7	3	10
계	256	13	58	58	116	9	115	3	127
비율	-	-	50.0	50.0	100.0	7.1	90.6	2.4	100.0

주 1) 조정중단: 사실확인 어려움, 피신청인 조정의사 없음 등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결
한 사건

2) 각하: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장이 각하한 사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조정제도는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신속한 분쟁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²²⁾임을 고려할 때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피신고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유무에 대한

22)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 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의결을 하는 것이 위원회 업무 본질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및 중재의 본질이 당사자간 합의 중심의 분쟁 해결임을 고려할 때, 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기술침해여부 등 법 위반 판단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침해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른 부담가중 및 소극적 판단이 우려된다는 입장임.²³⁾

또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신고인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처장 및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권고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추가하고 있으나(안 제8조의 3제3항),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유용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 제4조²⁴⁾에 따라 이미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협의는 불필요하여 개정안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이고,

23) 추가적으로 법 위반 판단권한이 없는 유사 조정위원회(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수준, 운영방식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4)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도 같은 이유로 부동의한다는 입장
임.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 사항을 반영
하여 특허청장의 명칭을 지식재산처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임.

4. 행정조사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기술 침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재차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6(이행강제금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가 기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u>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u>

현행법 제35조는 행정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금액이 큰 기술 침해행위의 경우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이행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한 입법례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²⁵⁾이 있음.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회회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요구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제재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금전적 제재가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이중규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²⁶⁾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행강제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처분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형벌적 제재수단이나,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은 금지행위로 보기 어려워 개정안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26)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2024), 242쪽

5. 행정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 불소명시 신고인 주장 진실의제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침해행위를 신고한 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8조의7(사업자 등이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외견상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더라도 소명의 시기 및 내용과 제출요구된 자료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소명이 형식적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전혀 소명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8조의 3제1항의 권고 및 제3항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실</u>

현행	개정안
	<u>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u>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사건의 특성상 증거의 편재로 인하여 사업자들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침해행위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제출 미이행시 신고인의 주장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술침해행위를 주장하는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자료제출의 이행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법원 소송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상대방사자에 대해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349조²⁷⁾ 및 「대·중

27)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²⁸⁾의 내용을 행정조사에 도입하려는 것인데, 행정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유사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행정조사과정에서 기술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피해중소기업을 위해 관련 자료의 확보·제출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원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양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조사자인 사업자 등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과도한 행정조치라는 비판이 우려되어
개정안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6.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구성 변경 등

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확대·변경하고(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③ -----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60명-----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u>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④ ----- ----- -----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 -.
<u><신설></u>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1. (생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2. <u>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u>	2. <u>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허청의 4급 이상</u> -----

현행	개정안
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u>공무원으로</u> ----- ----- ----- ---
<u>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u>	<u><삭 제></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23조의2(사무기구) ① 위원회의</u> <u>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u> <u>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u> <u>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u>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개정안은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구성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 구성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며,

위원자격 중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변경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소속을 중

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허청으로 한정하는 것임.

[표 7]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구성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위원수	50명 이내 (위원장 1명 포함)	60명 이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상임위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자격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u>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허청의</u>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8] 2025년 현재 위원회 직능별 구성 현황

구분	판사	변호사	변리사	학계	기술사/기술거래사	유관단체	계
직위(명)	3	12	14	6	10	5	5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은 현재 비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위원 정수 확대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확충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조인인 위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 소속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식재산처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증가추세에 있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실체과악과 신속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구성을 확대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취지는 일면 이해되나,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²⁹⁾ 규정 및 유사 위원회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 위원정수, 위원자격, 상임위원의 운영, 사무기구 설치 등에 관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9] 유사 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중기부	지식재산처	공정위	산업부
근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발명진흥법	하도급법	산업기술보호법
제도명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	산업기술분쟁조정
조정위원	판사, 변호사 등 50명	변호사, 변리사 등 80명	9명	변호사, 변리사 등 13명
	※ 사건별 3명 이내 조정부 구성 (중재부는 최대 5명)			
상임위원	-	-	1명(위원장)	-
운영 사무국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조정대상	중소기업 기술	산업재산권, 영업비 밀, 직무발명	대금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등	산업기술
신청주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인, 영업비밀보유자 등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 중 사무기구 설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①향후 AI등 기술분야 확대를 고려해 위원 정수를 개정안보다 확대(100명)할 필요가 있고, ②기술분쟁 조정부의 전문성 강화 및 신속한 자료 취합·분석 등을 위해 상임위원 또한 개정안보다 확대(5명 이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③위원 자격 중 현행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는 데 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임.

7. 위원회의 조정 절차 상향입법

개정안은 위원회 조정부의 조정안 작성, 조정의 종료 결정, 조정안 수락 후 의견 불일치 시 조정부의 견해 제시 등 하위법령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³⁰⁾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2(조정안의 작성 등) ① <u>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는 조정안에 이의를 붙여 제시할 수 있다.</u> ② <u>조정부는 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절차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사건의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사건의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수

30)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9호) 제26조(조정안 제시), 제27조(조정 의 성립), 제28조(조정의 중단 및 불성립), 제28조의2(조정조서의 정정)

현행	개정안
	<u>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당사자가 당해 조정부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u> <u>④ 조정부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u>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조정제도에 대한 당사자 및 국민의 이해도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개정안의 조정 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31)를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조정안의 작성) ①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

8. 대리인의 선임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신고·조정·중재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의 자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 법에 따른 신고·조정·중재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자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대리인 선임 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자 및 조정·중재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에 대한 인지가 제고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규정이 없더라도 이 법에 따른 신고·조정·중재 당사자는 「민법」 제114조부터 제136조까지³²⁾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2) 「민법」 제3절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문 의 처
02) 6788-5467

IV. 참고자료

1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정조사 개요 및 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도개요

- (조사목적) 기술침해 또는 유용 및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피해 입은 중소기업이 중기부 신고 시 시정권고, 공표 등 조치
 -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8조의2('18.12.13 시행), 「상생협력법」제40조('22.2.18 시행)
- (조직) 행정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팀** 구성('19.5월~)
 - * '25년 9월 기준 조사팀 현황 : 조사팀장 1명(5급), 조사관 2명(6급 1, 7급 1)
- (조사절차) 신고서 접수 → 요건검토 → 조사 → 행정조치
 - (요건검토·조사) 신고내용 검토, 사건 당사자 면담 및 추가 자료 요구 등을 실시하여 요건 해당 시 조사 개시
 - (행정조치) 조사결과에 따라 (기술침해) 시정권고(미이행 시 공표 가능) 또는 (기술유용) 시정명령(추가로 교육명령, 벌점부과 가능) 조치
 - * 당사자의 조정 참여 의사 유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제도' 연계를 통한 분쟁 해결도 지원

□ 기술침해·기술유용 행정조사 현황 ('18.12~'25.9월말)

- 총 109건 접수 : 종결 102건, 진행 7건 (검토중 7)
 - ※ 상생협력법상(기술유용·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조사 5건 포함('22년 1건 종결, '24년 4건(종결 3, 검토중 1))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진행	요건검토	-	-	-	-	-	-	-	7	7
	조사개시	-	-	-	-	-	-	-	-	-
	조사중지	-	-	-	-	-	-	-	-	-
	소계	-	-	-	-	-	-	-	7	7
종료	시정권고	-	-	1	1	-	-	1		3
	조정성립*	-	2	1	7	-	4	-		14
	조사불개시	2	4	5	1	2	1	11	1	27
	기타**	-	8	9	8	12	12	8	1	58
	소계	2	14	16	17	14	17	20	2	102
합계		2	14	16	17	14	17	20	9	109

* 공정거래조정원 연계 1건, 중기부·동반위 주관 자율조정 1건 포함

** 조사중지 6개월 경과에 따른 조사종결(19건), 신고인 취하 등(39건)

○ (행정조사 피신고인 유형)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계
피신고인(개사)	50	13	27	19	109
비율(%)	45.9	11.9	24.8	17.4	100

* 공공기관, 대학교, 협동조합, 개인(내부직원) 등

○ (조정중재 연계 현황)

구분	성립	불성립	조정중단	진행중	계
행정조사 연계	14*	8	11	2	35

* 공정거래조정원 연계 1건, 중기부·동반위 주관 자율조정 1건 포함

□ 주요 사례

행정
처
분

- (내용) 신고인 제품(의료영상정보시스템, PACS)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신고인의 영업비밀(소스코드)을 무단 사용하여 신고인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를 계속 수행하고, 경쟁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참여하였다며 중기부에 신고('21)



- (경과) 행정조사(자료요구, 현장방문 및 면담 등)를 통해 위법행위 확인 → 조사보고서 작성 → 전문가(침해자문단) 검토 → 피신고인 의견청취

- (결과) **시정권고('23.4)*** → 시정 이행여부 확인('23.5) → 조사종결

* (내용) 신고인의 개발소스 코드를 사용한 제품생산·판매, 유지보수 금지 / **제도 도입 이후 제1호 행정처분**

상
생
합
의

- (내용) 롯데헬스케어가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명목으로 알고케어가 개발중인 제품과 사업정보를 취득한 후 유사제품을 자체개발하였다며 중기부에 신고('23.2)



- (경과) 행정조사 개시 및 조정유도 → 조정개시('23.3) → 1·2차 조정회의('23.4~6) → **최종합의('23.7.17)**

- (결과) 롯데헬스케어 사업철수, 소모적 비방금지, 상생협력 등 내용으로 최종 합의 → 조사종결(7.24)

* 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공동으로 상생협력기금 3억원 출연(7.28, 동반위)



- (내용) LG생활건강이 휴대용 타투프린터 관련 협업 및 공동개발을 제안하고 NDA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구체적 사업협업 없이 유사제품을 자체 출시하였다며 중기부에 신고('23.4)



- (경과) 행정조사 개시 → 양측 합의 의사 확인 → 중기부·동반위가 공동기술개발 제안 등 합의 중재(10여 차례 실무회의) → **최종합의('23.7.10)**

- (결과) 공동기술개발 등 상생협력, 양측 4건의 고소·신고 등 취하,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으로 합의문 작성 → 조사종결(7.18)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중기부	지식재산처	공정위
근거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행정조사 명칭	중소기업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부정경쟁행위 조사	기술유용조사
보호대상	중소기업기술 (경제적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 부경법 영업비밀 요건과 동일	아이디어, 상품형태 등 ※ 영업비밀은 행정조사가 아닌 특사경 수사 대상	기술자료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의 자료,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도입시기	'19년	'18년	'18년
조직	기술보호과 內 조사팀 3명 (5급 1, 6급 이하 2)	부정경쟁조사팀 10명 (팀장 1, 4급 1, 5급 4, 6급 이하 4)	기술유용조사과 9명 (과장 1, 5급 5, 6급 이하 3)
접수 및 처리실적	연간 약 20건	-	-
조사거부· 방해 시 제재	• 과태료(최대 1천만원)	• 과태료(최대 2천만원)	• 과태료(최대 2억원)
위법 시 제재	• (기술보호법)시정권고 • (상생협력법)시정명령 • (미이행시)공표	•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 (미이행시)과태료(최대 2천만원)	•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수명사실 공표 • 과징금(대금의 최대 2배) • (상습법위반시)명단공표
특징	• 조정연계를 통한 분쟁 조기해소 유도	• 조정연계를 통한 분쟁 조기해소 유도	• 전속고발권 • 사법적 제재(벌금)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도개요

- **(목적)** 기업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을 통한 원만한 타협유도, 중재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소, 분쟁대응 비용지원 등으로 피해기업 구제
- **(지원내용)**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중재로 분쟁 해결 지원
 - * (조정) 조정부 도움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
 - (중재) 당사자간 중재 합의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 판정으로 해결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산정 비용 지원

< 주요 지원내용 >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조정성립 시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 법원연계 조정성립 시 양 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 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손해배상액 산정 비용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에 대한 평가 의뢰 및 비용 지원	최대 4,500만원

□ 지원현황

- '15년 이후 총 256건의 접수, 243건 종료, 13건 진행 중 (성립률 50.0%)

구분	접수	진행중	조정현황(종료)						
			조정안 제시			조정안 제시 불가			
			성립	불성립	계	신청인취하	조정중단*	각하**	계
15년	22	-	3	4	7	1	14	-	15
16년	17	-	6	8	14	2	1	-	3
17년	19	-	2	7	9	3	7	-	10
18년	19	-	3	9	12	-	7	-	7
19년	21	-	2	7	9	1	11	-	12
20년	30	-	6	5	11	-	19	-	19
21년	25	-	10	5	15	-	10	-	10
22년	24	-	9	1	10	1	13	-	14
23년	33	-	12	7	19	1	13	-	14
24년	20	-	4	3	7	-	13	-	13
25.9월	26	13	1	2	3	-	7	3	10
계	256	13	58	58	116	9	115	3	127
비율(%)	-	-	50.0%	50.0%	100.0%	7.1%	90.6%	2.4%	100.0%

* 조정중단 : 사실확인 어려움, 피신청인 조정의사 없음 등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결한 사건

** 각하 :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장이 각하한 사건

4

부처별 기술침해 구제 제도(조정중재) 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협력법(중기부)상의 수·위탁 분쟁조정은 수탁·위탁거래관계에서 납품대금 지급 지연 등 사건에서 주로 활용

구분	중기부	지식재산처	공정위	산업부
근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발명진흥법	하도급법	산업기술보호법
제도명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	산업기술분쟁조정
조정대상	중소기업 기술	산업재산권, 영업비 밀, 직무발명	대금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등	산업기술
신청주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인, 영업비밀보유자 등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조정위원	판사, 변호사 등 50명 ※ 사건별 3명 이내 조정부 구성(중재부는 최대 5명)	변호사, 변리사 등 80명	9명	변호사, 변리사 등 13명
운영 사무국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접수 건수 (‘24년)	20건	160건	1,105건 (기술유용 8건)	0건
조정성립률 *	50%	62%	36% * 신청대비 조정비율	-
신청인 지원	• 대리인선임비용 • 소송비용(불성립시) • 손해액산정비용	-	-	-

* 중기부·지식재산처 성립률은 조정안이 제시된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의 비율임